

**기 밀 유 지 계 약**

본 계약은 대한민국 서울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16층에 소재하는 회사인 **베링거인겔하임 동물약품**(이하 본 계약에서 “베링거”라 함) 과 … **[파트너의 명칭 및 주소]** (이하 본 계약에서"XXX"라 함) 간에 ……일[날짜 삽입]자로 체결되었으며, 이들 각각은 “당사자”라 하고 총체적으로 “당사자들”이라 한다.

**본 계약에서**, 베링거와 XXX는 … **[예: 잠재적인 사업 관계, 해외 신약 도입(in-licensing) 프로젝트 등]**와관련된 논의를 하고자 하며, 전술한 것의 목적상, 베링거와 XXX는기밀적, 독점적 속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정 정보를 서로 공개해야 한다;

**이제 이로써**, 계약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조 - 정의**

1.1 "계열사"는 XXX 또는 베링거인겔하임을 지배하거나, 이들의 지배를 받거나, 또는 이들과 공동 지배 하에 있는 회사 또는 사업체를 말한다. 본 정의의 목적상, "지배"는 계약 등을 통해 주식 자본에 대한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를 통하든 또는 그렇지 않든, 한 실체(자연인을 제외함)의 관리와 정책을 지시하거나 지시를 유도할 권한을 직접적으로든 또는 간접적으로든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 1. "기밀유지 기간"은 계약 발효일로부터 5년간 또는 계약 당사자들이 사업 관계를 유지하는(또는 사업 관계를 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동안 등, 둘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을 말한다;
  2. "정보"는 (i) 베링거의 경우, …. [예: 물질], 그리고 (ii) XXX의 경우, …. [예: 물질] 등과 관련된 일체의 시각적, 구두, 서면 및/또는 전자적 정보와 데이터, 자료 또는 노하우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3. "목적"은 …의 평가를 의미한다[예: 정보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향후 협력에 대한 당사자들의 관심].

**제 2 조 – 기밀유지 및 사용 금지 의무**

2.1 각 당사자는 기밀유지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한다:

1. 상대 당사자 또는 계열사가 당사자 또는 계열사에게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상대 당사자의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며,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상대 당사자의 정보를 제삼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계약 당사자들은 제삼의 당사자들의 무단 접근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특허와 관련된, 학술적 또는 기술적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음). 정보가 인터넷 메일을 통해 전달될 경우, 인터넷 메일 암호화 기술의 사용은 의무이다(당사자들간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베링거는 <http://guides.boehringer-ingelheim.com/>에 해당 기술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리고
2. 정해진 목적을 제외한 목적으로 상대 당사자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한 당사자 또는 그 계열사가 서면 또는 전자 서식을 제외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상대 당사자의 기밀유지 및 사용 금지 의무는, 그러한 정보가 공개 시 기밀로 표시되고 전자적 또는 서면으로 요약되어 최초 공개 후 30일 이내에 상대 당사자에게 제공될 경우에만 적용된다.
   2. 이에 따른 평가 과정에서, 각 당사자는 당사자, 그 계열사 및/또는 컨설턴트가 상대 당사자의 정보와 관련하여 축적하거나 발생시킨 일체의 자료와 결과를 상대 당사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자료와 결과는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가 적용되는 상대 당사자의 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각 당사자의 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정보가 상대 당사자에게 제공되는지 또는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자체 명의로 지적재산권을 신청할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각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부여되고 또한 부여되어야 하며, 상대 당사자는 그러한 권리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각 당사자의 정보를 구성하는 분리 불가능한 개선 결과의 경우, 베링거는 그러한 개선 결과의 소유자가 되나, XXX는 그러한 개선 결과가 XXX의 정보에만 관련되는 한에 한해, 비 배타적, 라이선스 재실시 가능한, 전세계의, 로열티 프리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3. 각 당사자는 또한 상대 당사자의 서면 요청 시 다음과 같이 하는데 동의한다:
3. 사본을 유지하지 않고 상대 당사자의 일체의 정보를 즉시 반송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단, 오로지 본 계약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려는 목적으로 그러한 당사자가 기록 보관소에 보관할 수 있는 사본 1 부는 제외할 수 있다; 그리고
4. 상대 당사자의 정보와 관련하여 일체의 업무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직접적으로든 또는 간접적으로든, 상대 당사자 및/또는 그 계열사로부터 제공 받았거나 상대 당사자, 그 계열사 및/또는 컨설턴트가 그 평가 과정에서 축적 또는 생성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상대 당사자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 기밀유지 및 사용 금지 의무로부터의 면제조항**

3.1 비밀을 유지하고 상대 당사자의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을 의무는 상대 당사자의 각각의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의 일부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상대 당사자 또는 그 계열사가 공개하기 전에 한 당사자 또는 그 계열사에게 공개된 것으로 문서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정보; 또는
2.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출판 등을 통해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 또는
3. 기밀유지의 의무 없이 다른 출처로부터 한 당사자 또는 그 계열사에게 공개된 것으로 문서를 통해 확인될 수 있고, 상대 당사자 또는 그 계열사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되지 않은 정보; 또는
4. 상대 당사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 없이 한 당사자 또는 그 계열사가 독립적으로 작성 또는 생성한 것으로 문서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정보.
   1. 정보는 그것이 단지 공개적으로 알려진 한 개 이상의 항목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다는 이유 만으로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제 4 조 – 허가 받은 공개**

4.1 각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상대 당사자의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 상대 당사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공개 당사자 또는 그 계열사들의 책임이 있는 직원 및/또는 컨설턴트를 제외하고, 공개해서는 안 된다. 상대 당사자의 정보가 그러한 직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공개되기 전에, 각 당사자는 본 계약 하에 그러한 당사자에게 부과된 의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밀유지 및 사용금지 의무를 그러한 직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먼저 부과해야 하나, 그러한 의무의 부과가 그러한 당사자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의무를 면제시킬 수는 없다.

* 1. 한 당사자가 정부 당국 또는 정부 기관의 법률, 규정, 규칙, 법 또는 명령 등에 의해 상대 당사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경우, 그러한 당사자는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있다. 단, 공개 당사자는 그러한 요구된 공개 사실을 상대 당사자에게 먼저 통보하고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그러한 공개를 가능한 한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개가 한 당사자로부터 본 계약에 규정된 다른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

**제 5조 - 기타조항**

5.1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지적재산권에 따른 라이선스나 권리를 부여하거나 또는 한 당사자가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약속을 암시 등을 통해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 1. 본 계약은 본 계약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들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당사자들간에 이전에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나 의사소통에 우선하며,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2. 본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시행되며, 대한민국 및 전세계의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된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릴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다.